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놀이활동 소리를 소음 정의에서 제외〉

■ 천하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796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교육·놀이활동 소리를 소음 정의에서 제외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2026년 5월 4일 천하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6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신 설> 2. ~ 11. (생 략)	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2. ~ 11.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¹⁾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되며,

동법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은 공장소음(제8조)과 생활소음(제21조), 교통소음(제26조), 항공기 소음(제39조)으로 구분됨.

[동법상 규제 대상 소음 구분]

구분	근거	내용	종류
공장소음	· 법 제8조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 에서 나오는 소음	-

1) 노래연습장, 무도장, 음악학원, 단란주점 등 (※ 참고자료 1 참조)

구분	근거	내용	종류
생활소음	· 법 제21조 · 시행규칙 제20조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산업단지,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 확장기에 의한 소음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 - 산업단지 등 지역 외의 공사 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 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통소음	· 법 제26조	교통기관(기차 자동차 전차 도로·철도) 에서 발생하는 소음	-
항공기 소음	· 법 제39조	공항인근이나 그밖의 지역의 항공기 소음	-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아이들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 또는 경찰에 소음 민원을 제기한 사례
가 발생하였음.²⁾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의 교육활동 중 발
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
리를 소음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현행법상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육성 소음’은 공동주택 및
노래연습장·체육시설 등 법령에서 지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리
로만 한정하고 있어(※참고자료1 참조),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발
생하는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동법상 규

2) 2025년 기준 학교 운동회에 관련하여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350건, 이 가운데 345건에서 실제 출동이 이
루어짐 (자료 : “아이들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으로 정한다, 주간조선)

제대상이 아니지만, 운동회·놀이활동 중 사용하는 확성기 소리는 ‘생활소음’ 규제 대상이 됨.

법률상 소음의 범위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개정안은 아동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경우 현행법 제2조(정의) 및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소음규제대상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³⁾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현행법상 규제대상 ‘소음’⁴⁾에 해당하지 않음.

그럼에도 개정안과 같이 정의 조항의 예외로 다시 명시할 경우 유치원,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의 소리는 규제대상 소음이 아님을 재확인하는 선언적 효과만이 예상됨.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4)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騒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둘째, 다만 현행법상 주거지역 등에 있는 학교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소리는 ‘생활소음’으로 인정되어 동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음 규제대상이 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교육 활동이나 놀이활동 중 사용하는 확성기 소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현행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해당 조문에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외에서는 아동의 육성 또는 활동으로 인한 소리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시간 또는 음량에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아동 소음 규제에 대한 해외 사례]

국가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제 여부	
		아동 육성, 활동	(운동회) 확성기
독일	연방방음보호법 (BImSchG)	X (어린이 시설의 소음 제외)	O (과도한 앰프, 사용시간 규제)
일본	도쿄도 환경확보 조례 등	X (보육시설, 공원에서 아이들 소음 제외)	O (시간, 음향방향, 음량 권고)
영국/ 미국	지방정부 소음 조례(Zoning)	X (사실상 제외, 방음벽 등 설치)	O (과도한 앰프, 삼시각 규제)
대한 민국	소음·진동관리법	X (규제 대상에 미포함)	O 확성기 사용 시 일반 생활소음 규제 적용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1 : 관련 조문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騒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 4. 생략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참고자료 2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 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 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 발진흥지구, 자연 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 는 학교·종합병 원·공공도서관	확 성 기	옥 외 설 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 업 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 성 기	옥 외 설 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 업 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